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0년 2월 26일

거창군 훈령 제438호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근로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경조사 휴가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②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③ 군수는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

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10일

④ 이 조에 따른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한다.

제13장(제76조)을 제14장(제79조)으로 하고 제13장(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등) ① 군수 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예방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또는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경조사 휴가) ① 군수는 근로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경조사 휴가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p>	<p>제38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근로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경조사 휴가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p> <p>②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p> <p>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 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p> <p>③ 군수는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p> <p>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p> <p>2. 재직기간 20년 이상: 10일</p> <p>④ 이 조에 따른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 설>	<p>제7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등)</p> <p>① <u>군수 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u></p> <p>② <u>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예방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신 설>	<p>제7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u> 2. <u>지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u> 3. <u>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u> 4. <u>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u> 5. <u>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u> 6. <u>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또는 무시하는 행위</u> 7. <u>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u> 8. <u>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u> 9. <u>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u>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635 315 783 353"><신 설></p> <p data-bbox="172 792 352 831"><u>제13장</u> 보칙</p> <p data-bbox="172 887 411 925"><u>제76조</u> (생 략)</p>	<p data-bbox="810 315 1422 353"><u>제7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u></p> <p data-bbox="810 360 1422 443">① 군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수하여야 한다.</p> <p data-bbox="810 450 1422 723">② 군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 data-bbox="810 792 1007 831"><u>제14장</u> 보칙</p> <p data-bbox="810 887 1286 925"><u>제79조</u> (현행 제76조와 같음)</p>

[별표 1]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단위: 명)

소속	직종	합계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소계	행정사무원	현장근로원	식당종사원		농기계수리원
계		73	57	32	19	3	3	16
기획예산 담당관		2	2	2				
행정과		11	8	2	3	3		3
인구교육과		6	5	5				1
재무과		1	1	1				
복지정책과		2	2	2				
경제교통과		2	2	2				
문화관광과		4	1	1				3
산림과		2	1	1				1
환경과		1	1	1				
건설과		13	13	1	12			
의회사무과		2	2	2				
농업 기술센터		8	8	5		3		
보건소		5	4	4				1
수도 사업소		7	3		3			4
체육시설 사업소		2	1	1				1
거창사건 사업소		3	1	1				2
거창읍		1	1		1			
면		1	1	1				

전환 근로자 정원표

○ 본 청

(단위: 명)

직종 소속	합계	행정 사무원	현장 근로원	사례 관리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아동 복지교사
계	<u>75(2)</u>	35	3	11	<u>8(2)</u>	<u>7</u>	11
행정과	1	1	-	-	-	-	-
<u>인구교육과</u>	<u>18(2)</u>	<u>3</u>	-	-	<u>8(2)</u>	<u>7</u>	-
<u>민원소통과</u>	1	1	-	-	-	-	-
재무과	6	6	-	-	-	-	-
복지정책과	<u>12</u>	<u>1</u>	-	11	-	-	-
<u>행복나눔과</u>	<u>12</u>	<u>1</u>	-	-	-	-	<u>11</u>
안전총괄과	14	14	-	-	-	-	-
경제교통과	2	2	-	-	-	-	-
문화관광과	4	3	1	-	-	-	-
산림과	4	2	2	-	-	-	-
환경과	1	1	-	-	-	-	-

- 괄호속 인원은 시간제 청소년상담사 정원

○ 직속기관

직종 소속	합계	행정 보조원	현장 근로원	농기계 수리원	보건 의료요원	임상 병리사	영양사	식당 조리원
계	18	4	3	2	6	1	1	1
농업 기술센터	9	4	3	2	-	-	-	-
보건소	9	-	-	-	6	1	1	1

I 개정이유

- 2019년 단체협약 결정사항 및 「근로기준법」 개정(2019. 1. 15. 시행)사항 반영하여 공무원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 자녀돌봄휴가 신설(안 제38조)
-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38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76조~제79조)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

●거창군 고시 제2020-25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2월 26일

거창군수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3	25	주간선도로	772	중로2-56	중로2-75	일반도로	가조마상	경고115호('79.5.24)	
변경	대로	3	13	25~42	주간선도로	772	중로2-56	중로2-75	일반도로	가조마상		시점부 폭원변경
기정	중로	2	56	15	주간선도로	9,930	소로2-281	대로3-13	일반도로	남하둔마	거고43호('08.9.25)	
변경	중로	2	56	15	주간선도로	9,930	소로2-281	대로3-13	일반도로	남하둔마		중점부 각각변경
기정	중로	2	75	15	주간선도로	523	대로3-13	중로2-57	일반도로	가조마상	경고115호('79.5.24)	
변경	중로	2	75	15~30	주간선도로	523	대로3-13	중로2-57	일반도로	가조마상		시점부 폭원변경
기정	중로	2	76	15	주간선도로	708	대로3-13	중로2-58	일반도로	가조IC	경고115호('79.5.24)	
변경	중로	2	76	15~40	주간선도로	708	대로3-13	중로2-58	일반도로	가조IC		시점부 폭원변경
기정	중로	3	11	12	보조간선도로	810	대로3-13	중로2-19	일반도로	중1-19	경고115호('79.5.24)	
변경	중로	3	11	12	보조간선도로	810	대로3-13	중로2-19	일반도로	중1-19		시점부 각각변경
기정	소로	2	189	8	국지도로	310	중로2-75	중로1-19	일반도로	가조	경고115호('79.5.24)	
변경	소로	2	189	8	국지도로	310	중로2-75	중로1-19	일반도로	가조		시점부 각각변경

2)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3-13	대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점부 폭원 확장 - 폭원 : 25m→25'42m - 연장 : 772m - 면적 : 19,300㎡→19,676㎡ (증3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지 교차로의 원활한 통행 도모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시점부 폭원을 일부 확장 변경함
중2-56	중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점부 가각 변경 - 폭원 : 15m - 연장 : 9,930m - 면적 : 148,950㎡→148,976㎡ (증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지 교차로의 원활한 통행 도모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종점부 가각을 변경함
중2-75	중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점부 폭원 확장 - 폭원 : 15m→15'30m - 연장 : 523m - 면적 : 7,845㎡→8,137㎡ (증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지 교차로의 원활한 통행 도모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시점부 폭원을 일부 확장 변경함
중2-76	중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점부 폭원 확장 - 폭원 : 15m→15'40m - 연장 : 708m - 면적 : 10,620㎡→10,887㎡ (증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지 교차로의 원활한 통행 도모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시점부 폭원을 일부 확장 변경함
중3-11	중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점부 가각 변경 - 폭원 : 12m - 연장 : 810m - 면적 : 9,720㎡→9,791㎡ (증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지 교차로의 원활한 통행 도모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시점부 가각을 변경함
소2-189	소2-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점부 가각 변경 - 폭원 : 8m - 연장 : 310m - 면적 : 2,480㎡→2,492㎡ (증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현황을 반영하여 시점부 가각을 변경함

나. 공간시설(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	가조공원	어린이 공원	가조면 마상리 152	4,075	감)10	4,065	경고115호 ('79.5.24)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	가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축소 - 위치 : 가조면 마상리 152일원 - 면적 : 4,075㎡→4,065㎡ (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보도 확보를 위해 공원 구역의 일부를 도로로 편입함에 따라 공원 면적을 축소함

2. 관계 도면 : 실음생략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26.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293-12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462-7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326-15	20090702	20200226	행정구역명(신원면+차황면) 반영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616-18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293-12	20091228	20200226	서쪽 산수리 골짜기와 나란히 짜를 이루므로 붙여진 행정구역 병곡리를 반영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울리 2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풍계2길 30-410	20090401	20200226	위천에서 내려오는 영천과 모동에서 내려오는 냇물경이 합류하여 하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거창군 공고 제2020-312호

「2020년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 사업」 신청 공고

먹거리 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중소·가족농 중심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를 위한 「2020년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 사업」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사업명 : 2020년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 사업
- 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 사업량 : 2개소(개소당 최대 50백만원)
- 신청자격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품목 및 공급물량을 납품 계약(협약)한 생산자 조직(개별농가 가능)
 -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생산자 조직(개별농가 가능)
 -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개별농가 가능)
- ※ 제외대상 : 불임 참조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공모접수 : 2020. 2. 20. ~ 2. 27. 18:00까지
- 접 수 처 : 읍·면 산업경제 담당
- 신청양식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공모절차

- 가. 1차 심사 : 추천대상자 선발(농업기술센터)
- 나. 2차 심사 : 최종선발(경상남도)

4. 기타 자세한 절차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지역식품담당(전화 940-8292) 로 문의 바랍니다.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 사업계획서

거창군 담당자 : 행복농촌과 지역식품담당 홍길동 ☎ 055-940-8292

1.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사업기간 : 00년
- 총사업비 : 000백만원(도비 00백만원, 시·군비 00, 자부담 00)
- 사업규모 : 개소, 면적 등 사업량 기재
 - 세부내용 : 비닐온실 증·개축 00㎡, 냉장설비 00㎡, 관정개발 0개소
소비자 산지체험교육 00회 등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지원대상자 : 0000 (대표자 홍길동, ☎ 000-000-0000)
 -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 공모절차에 의한 선정 등
- 세부사업내역

구분	위치	세부사업명 (시설설치, 교육 등)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3. 사업성과 목표설정

지 표 명	연차별 목표(실적 또는 계획)					목표치 산출근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품목별 생산물량 증가량(kg)						
품목별 납품물량 증가량(kg)						
참여농가수(호)						

4. 사업추진 제반 여건

- 생산능력 및 납품능력
 - 주요생산품목 및 생산량(전년도 기준)

품목	생산량(kg)	비고
		(인증종류등)

- 계약품목 및 물량

품목	생산량(kg)	비고
		(인증종류등)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은 센터 운영계획에 포함(예정)된 조직 (단체) 이어야함

- 인력고용현황(3개월이상) : 명(65세 이상 명)
- 인증(기술력) 보유현황 : *QC, HACCP 등*
- 자부담 능력 및 확보계획 :
- 사업부지 및 교육방법 등 검토 :

5. 시·군 사업계획 종합검토 의견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0. 2. 21.(금) ~ 2020. 3. 7.(토)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자동차 소유자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송달지	반송사유
차량번호	차명	성명				
경기B8더 9050	킬로 쓰	암*란	저당일부번호: 41120801440	국*호	경도부천시 원마루 상동**번자*호****	폐문부재

5.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후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5항의 규정에 따라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055-940-3295)

2020년 2월 21일

거 창 군 수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형남호*)』 등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일
거창군수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형남호*]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농업법인 누리농산 주식회사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개화2길 136	무단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지상1 차고시설을 주택용도로 용도변경 지상1 차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사찰) 용도로 용도변경	시정명령 (1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개화2길 136	폐문부재 [이사감]

4. 공고기간 : 2020. 2. 26. ~ 2020. 3. 12.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군구보
6. 안내사항

가. 시정기한 내 미이행시에는 즉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 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055-940-36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불법투기 CCTV(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5일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명 : 불법투기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3. 행정예고기간 : 2020. 2. 25. ~ 2019. 3. 16.(21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20. 2. 25. ~ 2019. 3. 16.(21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주요내용

-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유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설치위치

순번	읍 면	설 치 장 소	비 고
계		총 34개소	
1	거창읍	거열로1길 14-15	
2		김천리 472-103	
3		대동리 110-1	
4		대동리 683	
5		대동리 77-10	
6		대동리 783	
7		대평리 1452-49	
8		상림리 492-5	
9		상림리 841-4	
10		아림로2길 15	
11		아림로3길 39	
12		양평리 1026-1	
13		양평리 1043	
14		정장길 196	
15		죽전길 75	
16		중앙리 76-11	
17	주상면	성기리 1362	
18	웅양면	한기리 920-2	
19	고제면	산양길 119	
20		농산리 1401-1	
21		삼포길 88	
22	마리면	고학리 238-3	
23		말흘리 217-25	
24		말흘리 790-27	
25	위천면	모동리 656	

순번	읍 면	설 치 장 소	비 고
26	북상면	갈계리 379-6	
27		소정리 1831	
28		창선리 290-2	
29	가조면	마상리 336-19	
30		마상리 522-3	
31		석강리 1413	
32	가북면	용암리 1980-3	
33		용암리 374-1	
34		중촌리 2402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환경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우편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거창군청 환경과

○팩스 : 055-940-375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 의 처 : 거창군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055-940-3503)

주 민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불법투기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의견제출 내용		
불법투기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자체감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2. 개정 이유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일치되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별지서식 개인정보수집 최소화 및 정비, 지방의회 예산집행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신설(안 제2조의2)

나. 감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일부개정(안 제3조제2항)

다. 자료제출 요구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와 일치되도록 정비(안 제6조제1항)

라. 직제개편사항 반영(안 별지서식 제1호)

마. 개인정보수집 최소화(안 별지서식 제3호)

4. 예고기간 : 2020. 2. 26.(수) ~ 3. 17.(화)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1)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2) 전화번호 : 055) 940-3062 / FAX : 055) 940-302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55)940-30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안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군 출자·출연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별지서식 제1호, 별지서식 제3호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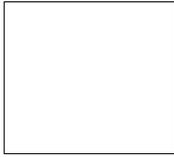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조의2(적용범위)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군 출자·출연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감사의 구분)	① (생략) ② 종합감사는 2년에 한 차례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이나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조(감사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감사는 3년에 한 차례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이나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출석답변·진술 요구 2. 증명서, 사유서, 그 밖의 관계 문서·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 ~ ③ (생략)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NO.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감 사
	
위 사람은 거창군 감사단임을 증명함	
20 . . .	
거 창 군 수	

6.8cm

9.3cm

(뒷 면)

<p style="text-align: center;">주 의</p> <p>1. 이 증명은 거창군 <u>감사단 편성공무원</u>에 한하여 휴대한다.</p> <p>2. 이 증명은 전출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p> <p>3. 이 증명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p>

관계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

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